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2024. 02.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292호로 2024년 2월 8일 최봉희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연합대)의 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3조)

#### 다. 자율방범대(연합대) 활동과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라. 자율방범대(연합대)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24. 2. 9. ~ 2. 14.) 결과: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2022.4.26.)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용어를 규정함.
- 안 제5조(방범활동 경비 지원)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5조제2항에서 지도·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8조(경비 지원중단) 및 안 제9조(지도 및 점검)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와, 교부한 지원금이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규정을 마련함.
- 안 제10조(포상)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함.

## ○ 검토 결과

- 우리 구(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16.7.1.)를 제정하여 지역 주민들이 범죄예방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를 구성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제정 당시 “자율방범대” 구성에 대한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제3조제3호 및 제7조제7호 규정으로 말미암아 “자원봉사활동”에 “자율방범대”를 포함하고, 동법 제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그동안 상위법 없이 조례로 운영해 오던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2022.4.26.) 및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되었음.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때문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다만,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의 업무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 행정적 지원 사항은 관할 구(區)로 관리주체가 이원화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 고 자 료

##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생략)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